

우체국 선거비관리통장 특약

제1조 【적용범위】

‘우체국 선거비관리통장’(이하 “이 예금”이라 한다)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‘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’ 및 ‘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’에 따른다.

제2조 【예금종류】

이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다.

제3조 【가입대상】

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실명의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한다.

- ①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지정하는 회계책임자
- ② 시·군·구 선거관리위원회

제4조 【가입금액 및 가입기간】

이 예금의 가입금액 및 가입기간은 제한이 없다.

제5조 【적용이율】

이 예금의 적용이율은 가입일 현재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epostbank.kr)에 게시된 이율을 적용한다.

제6조 【우대서비스】

- ① 이 예금의 우대서비스 면제기간은 제3조의 가입대상에 따라 달라지며, 면제 기준일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하는 선거일정을 기준으로 한다.
 1.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지정하는 회계책임자 : 예비후보자등록일 ~ 선거비용 수입·지출보고서 제출일
 2. 시·군·구 선거관리위원회 : 예금 신규 가입일(약정일) ~ 선거일 이후 3개월 해당 월의 말일까지
※ 약정일 : 선거마다 지정되는 우대서비스 제공 시작일
- ② 이 예금의 우대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다. 단, 법인가입자의 경우 모바일뱅킹, 스마트폰뱅킹 해당 서비스는 제외된다. 다른 은행(전자금융, 자동화기기 포함)을 통한 송금(이체) 수수료와 타행카드로 우체국자동화기기

(CD/ATM)를 이용한 송금(이체)시에는 면제되지 않는다.

1. 우체국 창구, 전자금융(폰뱅킹, 인터넷뱅킹, 모바일뱅킹, 스마트폰뱅킹), 자동화기기(CD/ATM)를 이용한 우체국간 또는 다른 은행으로 송금(이체) 수수료 면제
2. 우체국 자동화기기(CD/ATM)를 이용한 현금인출 수수료 면제
3. 우체국 창구, 전자금융(폰뱅킹, 인터넷뱅킹, 모바일뱅킹, 스마트폰뱅킹), 자동화기기(CD/ATM)를 이용해 이 통장에 송금(이체) 시 수수료 면제
4. 예금잔액증명수수료, 거래내역 등 금융정보제공수수료 면제
5. 통장(인감)분실 재발행 수수료 면제
6. 카드발급 수수료 면제
7. “예금입출금통지서비스” 수수료 면제 (최대 5회선)

제7조 【이자계산】

- ① 정기이자계산 기준일은 매년 3, 6, 9월 셋째 토요일이며 12월은 말일로 한다.
- ② 이자계산기간은 최초 예금일(또는 전 지급일)부터 당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으로 하고 이자계산은 매일의 최종 잔액에 대하여 해당 이율로 셈한다.

제8조 【과세부분】

이 예금은 일반과세로 가입 가능하다.

제9조 【기타】

이 예금은 양도할 수 없으며, 계좌대월 약정이 불가하다.

부 칙

- ① 이 특약은 2013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.